

# 기 악 용 지

불록기호 문서번호	432.4	전화번호	342 )	
		전경규정 조 호		
처리기한	기 악 자	결	자	
시행일자	김 익 진	제 2 시	자	
보존년한	기 악 일자	결	재 일 자	
보 조 기 관	도시계획국장			
	구획정리과장			
	계획 계장	공고제 61호		
업 종 별 명	환지 계장	도시 계획 과장	서무 과장	비서 과장 (80년 10월)
경 수 신 참	정지 계장	건축 과장	시민 과장	행정 과장
제 목	각 악 참조	통	검연 1970. 3. 18	정 서
				회 대 장 정 리
제 1 안	내부 결재			
<p>1967. 8. 10 토지구획정리 사업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시행명령된 신립지구는 지역적인 여건이나 당시의 시정방침상 구획정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32 조, 제 33 조 규정에 의하여          별안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p>				
제 2 안				
<p>서울특별시 공고 제 61호</p> <p>제목 신립지구구획정리 사업 계획공고</p>				

175 서울특별시

3-1

서울특별시도청(서울)

69

서울 도시계획사업 신립토지구획정리 사업은 당시의 시장 목표와 주민의 필요에 토용코자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32 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시행규칙 및 사업계획을 정하고, 사업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동 지구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공람에 공합니다.

이에 관계된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있으니라.

1970. 2.

서울특별시장

- |                       |                         |   |
|-----------------------|-------------------------|---|
| 1. 사업 목적              | 별책 사업 계획서와 같음.          | 1 |
| 2. 시행 면적              | 107 만평                  | 2 |
| 3. 사업 범위              | 일등포구 둑산동, 신립동, 복천동 각 일부 | 3 |
| 4. 비용부담 및 환지계획        |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함.        | 4 |
| 5. 공공용지 부담 및 청산금 처리방법 | 시행규칙 및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함.   | 5 |

### 제 3 안

수신 수신처 참조

발신 시장

### 제목 등 건

1. 토지구획정리 사업계획 공고를 별지 공고문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공고문을 기시하여 일반에게 주지시키는 동시 관계 등. 통. 반을 통하여 당시의 도시개발 계획을 전달은 물론,
2. 별첨 토지원부 지역내의 건축허가는 환지 예정지 지정공고시 까지 일체의 사무를 중지하기 바람.

### 첨부. 공고문 사본.

토지 대장 1 관할 구청안)

수신처 : 양동 ~~구~~ 구청장, 남부토지구획정리 사업소장

### 제 4. 안

수신 공보실장

발신 과장

제목 등 건

별지 공고문과 같이 공고하였음으로 시보 및 서울뉴스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고문 사본 1부. 꼬.

제 4 안

수신 수신처 참조

발신 시장

제목 신립토지구획정비사업 계획 공고

1. 67.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책정된 지역내의 귀하의 토지에 대하여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시행명령을 받고 사업계획을 수립 공고문과 같이 승인하여 공고하였기 통보하며,

2. 관계도면은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여 종합에 공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토지 목록

동	명	지	번		면	적		비	고
1			1						
1			1						
1			1						

수신처 : 별첨 토지원부의 토지소유자. 꼬.